



고용노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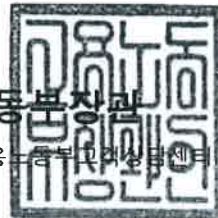
고용노동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흑한기 간이 휴게시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운용기준 안내**

1. 관련: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3호)
 2. 흑한기 옥외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간이 휴게시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운용기준을 안내하오니, 건설현장 점검·감독 또는 건설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을 활용하여 아래 내용을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작업 중 흑한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의 설치 및 해체에 소요되는 임대비용***은 **한시적(12월~2월)**으로 사용가능
- * 천막, 텐트 등 간이 휴게시설(설치 및 해체비용), 컨테이너(임대비용)
- ※ 간이 휴게시설이란 흑한에 장기간 노출되어 동상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유해 환경에 노출된 작업장소 인근에 컨테이너, 천막 등 임시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통상적으로 직원 복지를 위해 사용하는 휴게시설과는 다름
- 나. 간이 휴게시설의 내에서 근로자의 한랭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난방기기의 임대 비용**(단, 근무환경 개선, 시공이나 작업환경 개선 등의 목적이 포함된 경우라면 사용 불가). 끝.

고용노동부장관



수신자 청지청 건설산재지도과(산재예방지도과, 팀),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전문위원 류채은 행정사무관 이덕원 과장 진결 2023. 11. 27. 이경근

협조자

시행 건설산재예방정책과-4496 (2023. 11. 27.) 접수 산재예방지도과-7456 (2023. 11. 28.)

우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어진동, 고용노동부) / www.moel.go.kr

전화번호 044-202-8942 팩스번호 044-862-8075 / csilver55@korea.kr / 대한민국 공개